

1. 사업 개요

< '23년도 사업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구분	'22년		'23년															
세부과제	1) R&BD 연계지원과제 2) R&BD 직접신청과제	➔	1) R&BD 과제 (네트워크기획-R&BD 통합지원)															
지원단계	○ 1-2단계 연계 지원 (최대 2년 6개월) * 신청 및 선정 2회 추진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3">단계별 연계 지원</th></tr></thead><tbody><tr><td>과제 신청</td><td>(1단계) 기획지원 (최대6개월)</td><td></td></tr><tr><td></td><td>과제 신청</td><td>(2단계) R&BD (최대2년)</td></tr></tbody></table>	단계별 연계 지원			과제 신청	(1단계) 기획지원 (최대6개월)			과제 신청	(2단계) R&BD (최대2년)		○ 기획-R&BD 통합 지원 (최대2년) * 신청 및 선정단계를 1회로 기간 단축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3">통합지원</th></tr></thead><tbody><tr><td>과제 신청 및 선정</td><td>기획지원 (최대4개월)</td><td>R&BD (최대2년)</td></tr></tbody></table>	통합지원			과제 신청 및 선정	기획지원 (최대4개월)	R&BD (최대2년)
단계별 연계 지원																		
과제 신청	(1단계) 기획지원 (최대6개월)																	
	과제 신청	(2단계) R&BD (최대2년)																
통합지원																		
과제 신청 및 선정	기획지원 (최대4개월)	R&BD (최대2년)																
기획지원기관 역할	○ (1단계)에서만 기획운영 지원 - (1단계) 네트워크 기획 - (2단계) 역할 없음	➔	○ 기획지원 및 R&BD 전주기 지원 - (1단계) 네트워크 기획 - (2단계) R&BD 멘토링 지원 ○ 기획지원전담기관 역할 추진 * 관련 연구개발비 계상 필수															
정부지원금	○ 1, 2단계 최대 정부출연금 6억 3천만원 지원 - (1단계) 기획지원 3천만원 - (2단계) R&BD 6억원	➔	○ 최대 총정부출연금 6억원 지원 * 기획단계 3,300만원 포함															
가감점 사항	해당 공고 12~13페이지 참고																	

□ 사업목적

-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신규과제)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1억원, 20개 내외 과제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세부과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최대 2년 (기획기간 4개월 포함)	6억원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3,300만원 포함)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R&BD) 2023. 5. 11.(목) ~ 2023. 6. 15.(목) (36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3. 5. 11.(목) ~ 6. 15.(목)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1억원, 20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	신청·접수	평가·협약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R&BD	20개	'23.5월	5~6월	7~9월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사업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네트워크 기획 및 R&BD 통합지원

- 네트워크 기획 :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유도와 새로운 가치사슬의 확보를 위한 R&BD 소과정에 대한 기획지원 및 멘토링 지원
- 네트워크 기획과정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기획지원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을 통해 필수 진행하여야 하며, 동 위탁연구개발비(33백만원)는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지원
- 협약 후, 4개월 이내에 기획지원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을 통한 기획보고서 제출 필수

< 기획지원전담기관 기획 추진내용(안) >

시기		역할		내용	결과물
기 획 지 원	협약 전	협업체 역량분석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협업가치밸류체인 검증과 기업역량분석 추진	협업체 기업역량분석 보고서
		상호협력계약 공증체결 지원		수평적 협력을 유도하는 기술공유 및 수익분배 등 상호협력계약내용의 조정과 공증 진행	상호협력계약 공증본
	협약 후	기술	기술소싱전략 보완	각 기관의 선행연구, 개발역량 분석기반의 소싱 전략 점검 및 재설정	소싱전략보완계획
		특허	특허전략 검토	특허 동향, 유사특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지재산 회피방안 및 출원전략 수립	특허분석 보고서
			선행특허 출원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선행특허 출원을 통해 R&D과정의 지적재산권 사전획득지원	선행특허 출원 2건
		시장	사업화 전략 검토	전후방 시장분석, BMC · CPFR · N-synerge 등 협업사업화 분석 및 검증	사업화전략 검토보고서
		회계	경제성 분석	기획 전/후 계획의 경제성 분석 도출/비교	경제성분석보고서
		기획지원 결과보고			기획보고서
	멘 토 링	시장현황 모니터링		R&D수행과정의 시장변화 추이와 R&D과정의 공급망 협력방안 강구	-
사업화 기관 보완매칭		사업화 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협업 매칭	-		
사업화부속계약서 체결지원		사업화부속계약서 내용 검토·조정·공증 지원	사업화부속계약서		
협업승인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승인 신청지원	협업계획서		

- R&BD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네트워크 기획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획운영기관(기획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수행기관과의 기획에 소요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지원기간	총 연구개발비 구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R&BD	최대 2년 (기획기간 4개월 포함)	80% 이내 (6억 원 이내*)	20% 이상 (10% 이상 현금)

* R&BD는 연간 지원한도가 없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차별 납부하여야 함

** 기획지원을 위한 위탁연구개발비(3,300만원)는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필수 계상하여야 하며, 전문기관(TIPA)이 기획지원전담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직접 지급

< R&B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 총연구개발비 750백만원이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00백만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50백만원 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비고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4개월)	주관	39	1.8	16.2	18	57	변경가능
	기획지원 전담기관	33	0	0	0	33	필수
	총 주관*	72	1.8	16.2	18	90	
	공동1	34	0.85	7.65	8.5	42.5	변경 가능
	공동2	14	0.35	3.15	3.5	17.5	
	소계	120	3	27	30	150	
2차년도 (12개월)	주관	150	3.75	33.75	37.5	187.5	변경 가능
	공동1	100	2.5	22.5	25	125	
	공동2	50	1.25	11.25	12.5	62.5	
	소계	300	7.5	67.5	75	375	
3차년도 (8개월)	주관	80	2	18	20	100	변경 가능
	공동1	68	1.7	15.3	17	85	
	공동2	32	0.8	7.2	8	40	
	소계	180	4.5	40.5	45	225	
총계		600	15	135	150	75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2	18	20	100	

* '협약서에 작성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는 실제 주관 연구개발비+위탁 연구개발비(3,300만원) 합산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3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50백만원)의 10%임

**** 기관별 지원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80%)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20%) 계상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R&BD)
 - 공고기간 : 2023. 5. 11.(목) ~ 6. 15.(목)
 - 접수기간 : 2023. 5. 11.(목) ~ 6. 15.(목)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3년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후 연구계획서 본문1 시스템 업로드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파일 업로드) ○	
		본문2 (온라인 직접 입력) ○	
②	신용상태 조화·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④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참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모든 참여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서류를 취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중 1개	○	
⑧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⑨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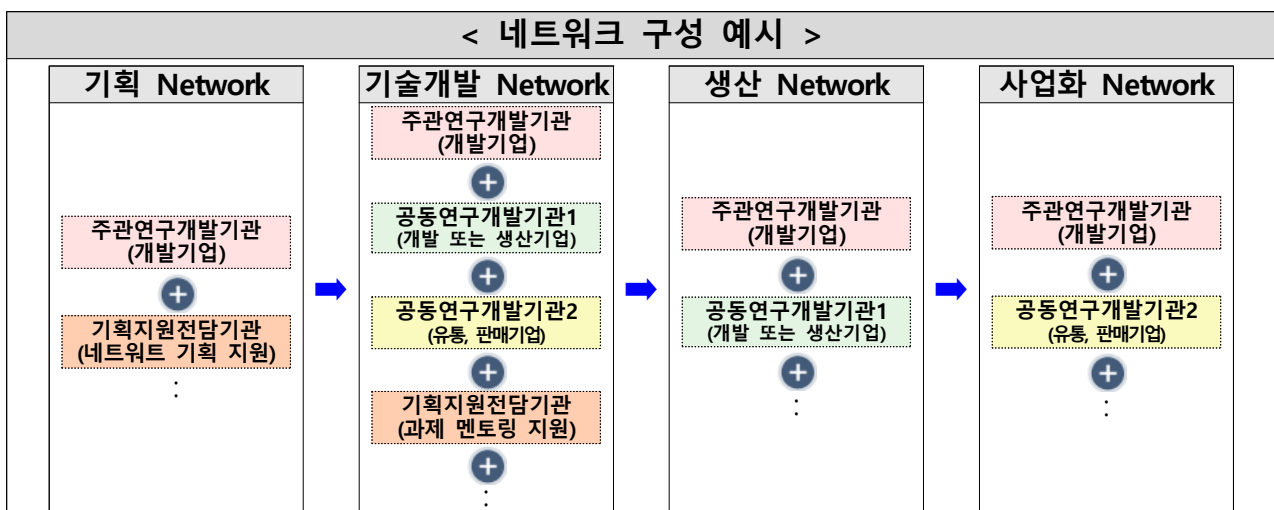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연구개발 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참여 필수

* 3개 이상 중소기업의 네트워크가 지원대상이므로,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기획지원전담기관 (참여 필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에 근거한 협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과제 신청 시 기획지원전담기관의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 으로 선택



* 공동연구개발기관2는 사업화기업 참여필수이며, 단순 특허분석, 컨설팅 기업 참여제한

□ 신청자격 검토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방법 (증빙서류)
주관연구 개발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이노비즈 확인서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했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공동연구 개발기관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동개발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

5.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가능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정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유사과제 → 유사과제 검토 시작하기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 지원 이력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 마당 → 지원과제조회 →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 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만 적용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㉔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㉕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까지 제출유예 가능

㉞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등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수행과제수 및 과제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만 해당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로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출연 연구과제 총 인건비 계상률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 사업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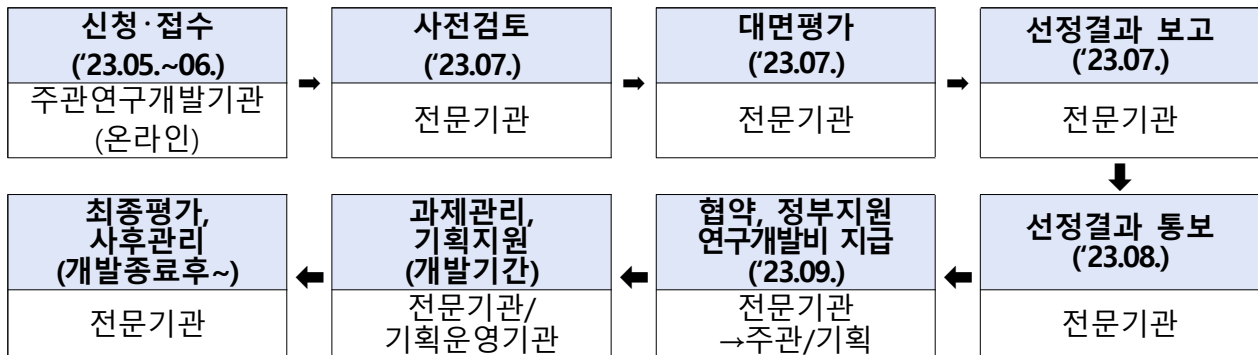
*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

6.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네트워크 기획 및 R&BD 통합지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 선정 평가방법

- (R&BD,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text{종합평점} = \frac{\text{대면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평가기준

○ 평가기준

대면평가			
구분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기술성	창의·도전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차별성 ■ 기술적 난이도 등	10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0
사업성	사업화 계획	■ 목표시장 분석의 정확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투자(판매)계획의 적정성	15
	글로벌화 역량	■ 글로벌 진출가능성(수출실적, 수입대체 증빙자료 등을 참고), 수출 관련 인력 현황, 목표 해외시장 이해도, 현지화 계획, 해외수출망 확보계획 등	10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의 R&D수행 경험 및 수행역량 등)	10
		■ 연구윤리(사업비 부정사용 이력,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	5
파급효과		■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10
		■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5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정책부합성		■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20
		■ 네트워크 구성 시 시너지 창출 가능성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에서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 기술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 사업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 * 서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대면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면평가 진행

□ 가 · 감점

- (가점) 점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 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 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에 한함)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①	R&BD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를 통해 추천된 과제	5점	전문기관 확인
②	R&BD	지방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업선정 확인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된 경우(중소벤처24 발급)	2점	전문기관 확인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대한 인정은 해당 과제 최종 선정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7.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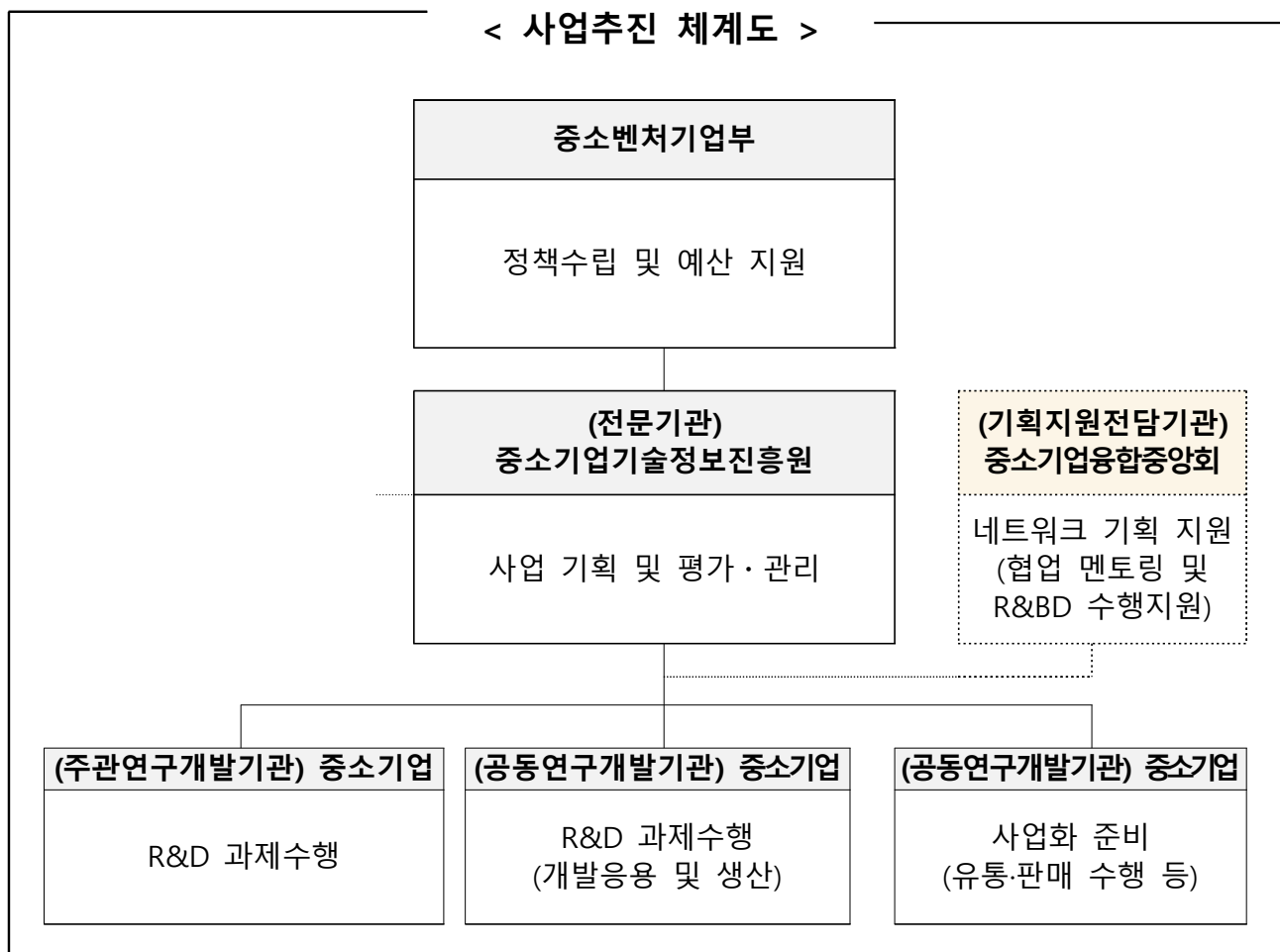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네트워크형)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9. 유의사항

□ 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기획운영기관은 총연구개발기간동안 기획지원전담기관으로 참여하며, 네트워크 기획 지원 및 R&BD 멘토링 업무 수행
 - 기획지원전담기관이 참여하는 1단계 기획지원 내용과 2단계 멘토링 지원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내에 명시 필수
 - * 과제 신청 시 기획지원전담기관의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 으로 선택
 - ② 본 사업은 R&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
 - ③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④ 신규 채용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를 말함
 -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 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⑥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음(단, 3개 이내 경쟁업체만 제시 가능)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⑨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복수 과제 신청 불가)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방형혁신사업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등	
기획지원 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기획 내용 문의, 기획지원전담기관 내용 작성 등	042-331-0576 042-381-923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